

## 「공정포장표시규칙」

- 국가·지역: 미국
  - 법률 번호: 연방관보 32권 11074면(제정), 연방규정 제15편제12부(현행)
  - 제정일: 1967년 7월 29일

원 문	번 역 문*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규정
Title 15 Commerce and Foreign Trade	제 15 편 통상 및 대외무역
Part 12 Fair Packaging and Labeling	제 12 부 공정 포장 및 표시
<p><b>Authority:</b> Secs. 5(d), 5(e), 80 Stat. 1298, 15 U.S.C. 1454; sec. 3, Dept. Order 177 (31 FR 6746), as amended (32 FR 3110).</p> <p><b>Source:</b> 32 FR 11074, July 29, 1967, unless otherwise noted.</p>	<p>근거: 법 제 5 조제 4 항, 제 5 조제 5 항, 법령집번호 제 80-1298 호, 미국법전 제 15 편제 1454 조; 부령 제 177 호(연방관보 31 권 6746 면) 제 3 조 및 그 개정(연방관보 32 권 3110 면).</p> <p>출처: 연방관보 32 권 11074 면, 1967 년 7 월 29 일, 또는 별도 표기].</p>
§ 12.1 Introduction.	제 12.1 조 총칙
(a) These procedures apply to the	① 이 규칙의 절차는 이하 "법"으로 칭하는

\* (역자주) 조 향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제1조
(a)	① 또는 제1항
(1)	1. 또는 제1호

discharge of the responsibility given to the Secretary of Commerce by sections 5(d) and 5(e)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Pub. L. 89-755, 80 Stat. 1299), hereinafter called the "Act". The word "Secretary", as used hereinafter, shall refer to the Secretary of Commerce or his authorized delegate.

(b) The Secretary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or the authority under the Act to issue any regulations governing the packaging or labeling practices of private industry.

(c) The Secretary does have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1) Determine whether the reasonable ability of consumers to make value comparisions with respect to any consumer commodity or reasonably comparable consumer commodities is impaired by undue proliferation of the weights, measures, or quantities in which such commodity or commodities are being distributed in packages for sale at retail.

(2) Request manufacturers, packers, and distributors, where a determination of undue proliferation has been made,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a voluntary product standard under the procedures governing the Department's voluntary standards program.

(3) Report to Congress with a recommendation as to whether legislation providing regulatory

「공정포장표시법」(공법 제89-755호, 법령 집번호 제80-1299호) 제5조제4항 및 제5조 제5항에 따라 상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책임의 이행에 적용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장관"은 상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② 장관은 법을 이유로 포장과 표시에 대한 민간 업계의 관행을 규율하는 규정을 발할 책임이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포장하여 소매로 유통하는 소비자 상품 또는 합리적으로 비슷한 소비자 상품의 중량, 치수 또는 수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그 소비자 상품 또는 합리적으로 비슷한 소비자 상품에 대하여 가치 비교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합리적 능력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

2. 과도한 증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 업자, 포장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상무부 자율표준제도와 관련한 절차에 따른 자율 제품표준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요청

3. 민간 업계에 자율제품표준의 수립 참여를 요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그 표준이 공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는 때,

authority should be enacted, when after 1 year following the date private industry has been requested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a voluntary product standard it is determined that such a standard will not be published, or when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such a standard it is determined that the standard has not been observed.

(d) The Act does not furnish a detailed, definitive explanation of "undue proliferation". It does, however, point out that the condition of "undue proliferation" must be one which "impairs the reasonable ability of consumers to make value comparisons" with respect to consumer commodities. Generally, therefore, the Department will determine "undue proliferation" on a case-by-case basis, and, accordingly, is establishing by these procedures an orderly process for such determinations.

(e) As used hereinafter the term "undue proliferation" shall refer to such undue proliferation—of the weights, measures or quantities in which any consumer commodity or reasonably comparable consumer commodities are being distributed for sale at retail—as impairs the reasonable ability of consumers to make value comparisons with respect to such consumer commodity or

또는 그 표준이 공표된 뒤에 이행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의 필요 여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④ 법은 "과도한 증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은 "과도한 증가"의 조건으로서 소비자 상품에 대하여 "가치 비교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합리적 능력을 저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상무부는 "과도한 증가"를 사건별로 판단할 것인바, 이 규칙의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판단을 위한 일정 절차를 수립하고자 한다.

⑤ 이하에서 사용하는 "과도한 증가"란 법 제 5조제4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포장하여 소매로 유통한 소비자 상품 또는 합리적으로 비슷한 소비자 상품의 중량, 치수 또는 수량의 과도한 증가로서, 소비자 상품 또는 합리적으로 비슷한 소비자 상품에 대하여 가치 비교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합리적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commodities, as set out in section 5(d) of the Act.

#### § 12.2 Undue proliferation.

##### (a) Information as to possible undue proliferation.

Any person or group, including a State or local governmental entity, is invited to communicate information to the Secretary concerning the possible existence of undue proliferation. Such communications should be in writing and include supporting information and explanations.

##### (b) Initiation of inquiry as to undue proliferation.

Upon receipt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possible existence of undue proliferation, the Secretary will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showing of good cause warranting an inquiry.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good cause exists, he shall initiate an inquiry for the purpose of finding facts concerning the existence of undue proliferation.

##### (c) Procedures for inquiry –

###### (1) Cooperation with State and local officials.

Any inquiry initiated under paragraph (b) of this section may be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State and local weights and measures officials.

###### (2) Participation by interested persons.

The Secretary may, during the course of the inquiry, afford

#### 제 12.2 조 과도한 증가

##### ① 과도한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정보

주 또는 지역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든지 과도한 증가 가능성의 존재와 관련한 정보를 상무부에 전달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한 전달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와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과도한 증가에 대한 조사 착수

상무부장관은 과도한 증가 가능성의 존재와 관련한 정보를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무부장관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도한 증가의 존재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조사 절차

###### 1. 주 및 지역 공무원 협업

이 조 제2항에 따라 착수하는 조사는 중량 및 치수 사무를 담당하는 주와 지역의 공무원과의 협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

###### 2. 이해관계인 참여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에게 그 조사와 관련이 있는 의견, 자료,

interested persons or groups an opportunity to submit in writing comments, data, arguments, views, or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nquiry.

**(d) Proposed determination as to existence of undue proliferation.**

(1) If, after consideration of all relevant information, the Secretary concludes that undue proliferation appears to exist, he shall publish a proposed determination to this effect. The proposed determination shall identify the particular consumer commodity or commodities involved and shall be accompanied by a concise statement of the facts upon which it is based.

(2) Within 60 days after publication of the proposed determination, any interested party may submit in writing comments, data, arguments, views, or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proposed determination. All written submissions shall be made a part of the public record.

(3) Within 30 days after the proposed determination has been published, any interested party may request in writing an oral hearing to present his views. The granting of such a hearing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 Any such hearing shall be public and notice thereof shall be published at least 15 days in advance. A transcript of the hearing shall be made part of the public record.

쟁점, 입장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과도한 증가의 존재에 대한 잠정판단**

1. 장관은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한 뒤 과도한 증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그러한 취지를 밝혀 잠정판단을 게재하여야 한다. 잠정판단에는 그 판단의 대상이 된 소비자 상품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잠정판단의 게재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사자는 그 잠정판단과 관련이 있는 의견, 자료, 쟁점, 입장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모든 서면은 공공기록의 일부로 한다.

3. 잠정판단의 게재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의 개최 여부는 장관 재량으로 한다. 청문회는 공개로 하며 적어도 청문회 15일 전에는 그에 대한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청문회 속기록은 공공기록의 일부로 한다.

**(e) Final determination as to undue proliferation.**

As soon as practicable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s described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shall either publish a final determination of undue proliferation, or he shall publish a notice withdrawing his proposed determination of undue proliferation. In no event shall the withdrawal of a proposed determination operate to preclude the initiation of another inquiry regarding the same or similar subject matter under paragraph (b) of this section.

**§ 12.3 Development of voluntary product standards.**

**(a)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a voluntary product standard.**

Whenever the Secretary publishes a final determination of undue proliferation under § 12.2(e), he shall invite manufacturers, packers, and distributors of the commodity or commodities involved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a voluntary product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Act and the Department's published procedures for voluntary product standards. The term "Voluntary Product Standard" as used in this section means a standard for weights, measures or quantities in which the commodity or commodities are being distributed in packages for sale at retail.

**(b) Determination that voluntary**

**⑤ 과도한 증가에 대한 확정판단**

이 조의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이내에, 장관은 과도한 증가가 있다는 확정판단을 게재하거나, 과도한 증가에 대한 잠정판단을 철회하는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잠정판단의 철회는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조사 착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제 12.3 조 자율제품표준 수립**

**① 자율제품표준의 수립 참여 요청**

장관은 제12.2조제5항에 따라 과도한 증가가 있다는 확정판단을 게재할 때마다, 그 판단의 대상이 된 상품의 제조업자, 포장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요건과 상무부에서 공표한 자율제품표준 절차에 따른 자율제품표준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사용하는 "자율제품표준"이란 포장하여 소매로 유통하는 상품의 중량, 치수 또는 수량에 대한 표준을 말한다.

**② 자율제품표준이 공표되지 아니할 것이라**

product standard will not be published.

(1) If a voluntary product standard has not been develop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participation was invited, the Secretary may conclude that a voluntary product standard will not likely be published. Upon reaching such a conclusion, the Secretary will publish a proposed determination that a voluntary product standard will not be published.

(2) Within 60 days after publication of the proposed determination, any interested party may submit in writing comments, data, arguments, views, or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proposed determination. All written submissions shall be made a part of the public record.

(3) Within 30 days after the proposed determination has been published, any interested party may request in writing an oral hearing to present his views. The granting of such a hearing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 Any such hearing shall be public and notice thereof shall be published at least 15 days in advance. A transcript of the hearing shall be made part of the public record.

(4) As soon as practicable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s described in paragraphs (b)(2) and (3)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shall either publish a final determination

## 는 판단

1. 참여 요청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율제품표준이 수립되지 아니한다면, 장관은 자율제품표준이 공표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장관은 자율제품표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잠정판단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잠정판단의 게재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해당사자는 그 잠정판단과 관련이 있는 의견, 자료, 쟁점, 입장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모든 서면은 공공기록의 일부로 한다.

3. 잠정판단의 게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해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의 개최 여부는 장관 재량으로 한다. 청문회는 공개로 하며 적어도 청문회 15일 전에는 그에 대한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청문회 속기록은 공공기록의 일부로 한다.

4. 이 조의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이내에, 장관은 자율제품표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정판단을 게재하거나, 이 조의 제2항제1호에 따른 장

that a voluntary product standard will not be published, or he shall publish a notice withdrawing his proposed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In no event shall the withdrawal of a proposed determination operate to preclude the publication of another proposed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the same or similar subject matter.

**(c) Determination that a published voluntary product standard has not been observed.**

(1) Whenever the Secretary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voluntary product standard published under these procedures is not being observed he shall initiate an inquiry to determine such fact.

(2) If,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developed during the inquiry, the Secretary concludes that the voluntary product standard is not being observed, he shall publish a proposed determination to this effect. The proposed determination shall identify the particular standard involved and shall be accompanied by a concise statement of the facts upon which it is based.

(3) Within 60 days after publication of the proposed determination, any interested party may submit in writing comments, data, arguments,

관의 잠정판단을 철회하는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잠정판단의 철회는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별도의 잠정판단 게재를 금지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표된 자율제품표준이 이행되지 아니한다는 판단**

1. 장관은 앞의 절차에 따라 공표된 자율제품표준이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장관이 조사로 확보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율제품표준이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그러한 취지를 밝혀 잠정판단을 게재하여야 한다. 잠정판단은 해당하는 특정 표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잠정판단의 게재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사자는 그 잠정판단과 관련이 있는 의견, 자료, 쟁점, 입장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모든 서

views, or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proposed determination. All written submissions shall be made a part of the public record.

- (4) Within 30 days after the proposed determination has been published, any interested party may request in writing an oral hearing to present his views. The granting of such a hearing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 Any such hearing shall be public and notice thereof shall be published at least 15 days in advance. A transcript of the hearing shall be made part of the public record.
- (5) As soon as practicable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s described in paragraphs (c)(3) and (4) of this section, and upon consideration of all relevant information, the Secretary shall either publish a final determination that the voluntary product standard is not being observed, or he shall publish a notice withdrawing his proposed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c)(2) of this section. In no event shall the withdrawal of a proposed determination operate to preclude the initiation of another inquiry regarding the same standard under paragraph (c)(1) of this section.

#### § 12.4 Report to the Congress.

Whenever the Secretary publishes a final determination under § 12.3(b)(4) or §

면은 공공기록의 일부로 한다.

4. 잠정판단의 게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해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의 개최 여부는 장관 재량으로 한다. 청문회는 공개로 하며 적어도 청문회 15일 전에는 그에 대한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청문회 속기록은 공공기록의 일부로 한다.

5. 이 조의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이내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장관은 자율제품표준이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확정판단을 게재하거나, 이 조의 제3항제2호에 따른 장관의 잠정판단을 철회하는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잠정판단의 철회는 동일 표준에 대하여 이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도의 조사 착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 제 12.4 조 의회 보고

장관은 제1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12.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확정판단을 게재할 때마다,

12.3(c)(5), he shall promptly report such determination to the Congress with a statement of the efforts that have been made under the voluntary standards program and his recommendation as to whether Congress should enact legislation providing regulatory authority to deal with the situation in question.

자율표준제도에 따라 추진하여 온 활동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의회가 문제 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장관의 건의와 함께 그 판단을 신속히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